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업무의 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제2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 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